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관한 비용 보조 근거 신설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87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668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위임 규정에 자동차의 크기·무게 등 고려 명시(안 제19조의5제1항)	2
2.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관한 비용 보조 근거 신설(안 제21 조제1항)	8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220668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또한 대형화되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에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조의5제1항).

Ⅲ. 검토의견

1.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위임 규정에 자동차의 크기·무게 등 고려 명시(안 제19조의5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¹⁾의 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때 자동차의 크기·무게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u>국토교통부령으로</u> 정한다.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 --- <u>자동차의 크기·무게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u>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주차장법」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²⁾에서

1)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먼저 수용가능한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무게 등 자동차 제원에 따라 ‘중형 주차장’과 ‘대형 주차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①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 장치, ②정류장 규모, ③바닥면의 최소 조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

구분	중형 기계식주차장	대형 기계식주차장	비고
수용가능한 자동차 제원	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u>무게 1,850킬로그램</u> <u>이하인</u> 자동차를 주차	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u>무게 2,200킬로그램</u> <u>이하인</u> 자동차를 주차	

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분	중형 기계식주차장	대형 기계식주차장	비고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 장치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전면공지 또는 자동차 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방향전환장치 설치 필요
정류장 규모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 의 차로(진입로) 또는 전면 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 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정류장)를 설치 필요 20대 초과시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 확보
바닥면의 최소 조도	-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제외

*자료 : 국토교통부

위의 표와 같이, 현행법령 상 기계식주차장은 중형 기계식주차장(1,850kg 이하인 자동차)과 대형 기계식주차장(2,200kg 이하인 자동차)으로 구분되는데,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무게 1,850kg 이하인 자동차,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무게 2,200kg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자동차 무게와 크기가 비교적 연동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제로 중량이 큰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더 넓고 긴 전면공지, 정류장 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음.

한편, 2023년말 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수는 중형이 36,335기로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고, 대형은 429기로 1.2%를 차지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 설치 현황(2023년도 말 기준) >

구 분	합계	중형 기계식주차장 (1,850kg 이하)	대형 기계식주차장 (2,200kg 이하)
설치기수(기)	36,764	<u>36,335(98.8%)</u>	429(1.2%)

*자료 : 국토교통부

그런데 최근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23년말 기준 전기차 등록대수는 총 543,900대로 무게별로 구분하면 ①1,850kg 미만인 36,892대로 6.8%, ②1,850~2,200kg 이하가 132,619대로 24.4%, ③2,200kg 초과가 374,389대로 68.8%를 차지하고 있음.

< 전기차 무게별 현황 (2023년도 말 기준) >

구분	합계	1,850kg 미만	1,850~2,200kg 이하	2,200kg 초과
등록대수(비율)	543,900대	36,892대(6.8%)	<u>132,619대(24.4%)</u>	<u>374,389대(68.8%)</u>

*자료 : 국토교통부

즉, 전기차의 무게는 1,850kg 이상이 전체의 93.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비해 기계식주차장은 1,850kg 이하인 중형 기계식주차장이 대부분이며, 2,200kg을 초과하는 68.8%에 달하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규격에 맞추어 설정된 현행 설치기준을 동일 크기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중량이 크고 점점 대형화³⁾되는 전기차 증가에 맞춰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해됨.

이를 위해 안 제19조의5제1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자동차의 크기·무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명시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중량이 큰 전기차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전기차 하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이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은 수용가능한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어, 필요 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임⁴⁾.

3)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전기자동차 등장에 따른 대형 화재·붕괴 위험” 일부 발췌 (2023.1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p.16)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설치되는 배터리와 같은 전용부품들의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전기자동차의 공차중량 증가

-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요 부품 엔진과 변속기를 대신하여 전기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무게만 약 450kg 수준으로 내연기관의 부품보다 더 무거움
- 또한, 자동차 제작시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과 차량 내 편의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에 설치되는 부품들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 무게는 증가 추세
-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동일모델에 대해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공차중량을 비교해보면, 전기자동차 모델이 내연기관자동차 보다 약 300kg 더 무거움

다. 국토교통부 의견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은 수용가능한 자동차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하여 규정(「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국토교통부는 2024년 3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주차장 전기차 관련 화재 대책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어, 관련 제도 정비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관한 비용 보조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주차장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노외주차장의 설치</u> 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u>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 ----- <u>주차장의 공급을</u> ----- ----- <u>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관한</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주차장법」 제2조제1호⁵⁾에 따라 주차장은 ①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설치되어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②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③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되어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됨.

<주차장 종류 및 설치 주체>

구 분	내 용	설치주체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민간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민간

※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5)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말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2023년말 기준 전국에 총 36,764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중 설치된 지 20년 이상이 넘는 주차장이 15,037기로 40.9%에 달하고 있음.

< 기계식주차장 통계 (2023년말 기준) >

시도	설치기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347	55	80	27	32	153
경기도	4,146	758	681	329	470	1,908
경상남도	1,373	149	276	133	255	560
경상북도	544	51	147	33	70	243
광주광역시	905	212	181	95	68	349
대구광역시	2,345	352	400	148	196	1,249
대전광역시	1,350	100	94	127	184	845
부산광역시	6,173	1,334	1,641	521	667	2,010
서울특별시	14,826	3,038	2,342	1,362	1,944	6,140
세종특별자치시	7	3	0	0	1	3
울산광역시	643	98	138	64	113	230
인천광역시	2,364	320	908	254	179	703
전라남도	298	71	64	30	15	118
전라북도	112	7	4	9	14	78
제주특별자치도	555	121	193	28	48	165
충청남도	433	39	64	59	164	107
충청북도	343	49	58	29	31	176
총합계	36,764	6,757	7,271	3,248	4,451	15,037

*자료 : 국토교통부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3년말 기준 전기차의 무게는 1,850kg 이상이 전체의 93.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비해 기계식주차장은 1,850kg 이하만 수용가능한 중형 기계식주차장이 대부분이며, 2,200kg 이 초과하는 68.8%에 달하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처럼,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노후화와 최근 고중량 전기차 차량의 확산에 따라 안전을 위한 개선 혹은 신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1조제1항에서 설치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설치 외에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관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계식주차장의 노후화와 고중량·대형 차량 증가로 인한 안전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주차장 공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 필요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나, 안 제21조제1항의 비용 보조 대상은 ‘부설주차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기계식주차장 중 노외주차장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개정안에 따른 개선 및 보수 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기계식주차장 형태가 아닌 부설주차장도 비용 보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3년말 기준 전국에 기계식주차장은 총 27,118개소(36,764기), 부설주차장은 1,861,375개소임(참고1 및 참고2 참조)⁶⁾.

다음으로, 부설주차장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주차장법」 제19조⁷⁾)이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유지 및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⁸⁾).

6) 기계식주차장 27,118개소임(노외+부설 기계식주차장 합계, 별도관리)

7)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8)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자에게 설치 및 관리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개인 사유 재산인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현행 「주차장법」 제21조제3항⁹⁾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¹⁰⁾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¹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0)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보조) ② 국가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비용의 일부
2. 제1호 외의 자가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
가.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비용의 2분의 1
나.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비용의 3분의 1

11) 예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보조 및 용자의 대상) 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 설치자
2.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4.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5.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주차장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 보조와 주차장 환경개선 비용 보조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 「주차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 보조 >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환경개선 비용 보조(국가)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보조		
공영 노외주차장	민영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노외·부 설 포함)	민영 주차장 (노외·부설 포함)	
	주차장 면적			주차장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2천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	설치비용의 1/2	설치비용의 1/3	사업비용의 일부	사업비용의 1/2	사업비용의 1/3

*노상주차장은 공영주차장만 있음.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주차장법」 제2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계식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국토교통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개선·보수 비용을 보조할 경우 설치·관리 책임이 부설주차장 관리자에서 행정청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도시의 주차난 해소, 열악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노외주차

장의 설치·개선 비용 지원과 법적 설치 의무인 부설주차장의 개선·보수는 달리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의무시설¹²⁾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인천 중구청, 수원시, 화성시)

의무 설치 시설이고 사유재산이며 일반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부설주차장에 비용 보조는 부적절하고, 예산 지원을 핑계로 부설주차장의 개선·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공영주차장 신규사업 및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고, 신규 주차시설 확보나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84

12) 「건축법」에 따른 승용승강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 등

참고1

기계식주차장 통계 (2023년말 기준)

구 분	개소		기수		면수	
	개소	비율	기수	비율	면수	비율
합 계	27,118	100%	36,764	100%	870,587	100%
서 울	11,245	41.5%	14,826	40.3%	301,718	34.7%
부 산	4,496	16.6%	6,173	16.8%	167,337	19.2%
인 천	2,012	7.4%	2,364	6.4%	67,232	7.7%
대 구	1,323	4.9%	2,345	6.4%	50,575	5.8%
대 전	856	3.2%	1,350	3.7%	22,786	2.6%
광 주	614	2.3%	905	2.5%	27,504	3.2%
울 산	502	1.8%	643	1.7%	18,871	2.2%
세 종	5	0.0%	7	0.0%	90	0.0%
경 기	3,188	11.8%	4,146	11.3%	111,984	12.9%
강 원	259	1.0%	347	1.0%	9,086	1.0%
충 북	230	0.8%	343	0.9%	10,202	1.2%
충 남	335	1.2%	433	1.2%	8,211	0.9%
경 북	400	1.5%	544	1.5%	12,016	1.4%
경 남	979	3.6%	1,373	3.7%	36,312	4.2%
전 북	79	0.3%	112	0.3%	2,027	0.2%
전 남	202	0.7%	298	0.8%	8,631	1.0%
제 주	393	1.4%	555	1.5%	16,005	1.8%

*자료: 국토교통부(지자체 행정자료 취합)

참고2

주차장 통계 (2023년말 기준)

구분	(개소)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면)		소계	유료	무료	소계	공영	민영	
합계	(개소)	1,909,763	21,919	11,724	9,965	26,469	15,744	10,725	1,861,375
	(면)	28,967,582	543,701	219,364	324,337	1,322,870	888,245	434,625	27,101,011
서울	(개소)	305,903	8,033	8,033	-	1,916	1,160	756	295,954
	(면)	4,548,788	103,737	103,737	-	99,805	74,636	25,169	4,345,246
부산	(개소)	72,405	1,209	932	277	3,609	670	2,939	67,587
	(면)	1,735,007	28,106	23,849	4,257	86,047	23,002	63,045	1,620,854
대구	(개소)	90,122	1,253	88	1165	1,059	584	475	87810
	(면)	1,225,565	38,000	5435	32,565	48,581	33,694	14,887	1,138,984
인천	(개소)	80,316	1,706	251	1455	826	647	179	77784
	(면)	1,551,173	54,255	6,815	47,440	41,898	34,068	7,830	1,455,020
광주	(개소)	29,391	185	7	178	720	325	395	28,486
	(면)	723,686	4,316	489	3,827	33,082	15,595	17,487	686,288
대전	(개소)	51,978	364	41	323	591	346	245	51,023
	(면)	961,553	16,962	3834	13128	29,591	14,126	15,465	915,000
울산	(개소)	52,861	128	65	63	1,150	292	858	51,583
	(면)	731,849	20,715	15,963	4,752	48,439	20,091	28,348	662,695
세종	(개소)	10,663	8	2	6	82	66	16	10,573
	(면)	156,724	214	46	168	5,692	4,232	1,460	150,818
경기	(개소)	531,122	3,465	1,899	1,566	3,376	1,952	1,424	524,281
	(면)	7,819,608	103,451	44,635	58,816	245,713	139,787	105,926	7,470,444
강원	(개소)	92,555	803	77	726	1,429	1117	312	90,323
	(면)	1,003,270	27,261	2,491	24,770	81,956	69,930	12,026	894,053
충북	(개소)	78,156	646	41	375	785	544	241	76,725
	(면)	974,787	14,610	1,377	13,233	45,765	30,880	14,885	914,412
충남	(개소)	82,072	228	20	208	1,399	1,107	292	80,445
	(면)	1,554,441	8,313	728	7,585	120,112	100,783	19,329	1,426,016
전북	(개소)	50,432	438	3	435	1,309	924	385	48,685
	(면)	920,539	16,175	145	16,030	66,530	47,647	18,883	837,834
전남	(개소)	73,416	382	27	355	2,125	1,736	389	70,909
	(면)	896,037	19,085	1011	18,074	121,818	95,219	26,599	755,134
경북	(개소)	117,909	928	79	849	1,976	1260	716	115,005
	(면)	1,496,565	27,924	3,090	24,834	82,461	64,306	18,155	1,386,180
경남	(개소)	136,195	1,358	153	1,205	2,819	1,838	981	132,018
	(면)	2,197,091	51,415	5,342	46,073	125,410	84,496	40,914	2,020,266
제주	(개소)	54,267	785	6	779	1,298	1,176	122	52,184
	(면)	470,899	9,162	377	8,785	39,970	35,753	4,217	421,767

*자료: 국토교통부(지자체 행정자료 취합)